

『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
다.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6조 및 제7조)

라.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, 제3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은,

- 구미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써,
- 착한가격업소는 정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, 우리 시에는 '23년 3월 기준 39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, 행정안전부에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.
-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